

수질피해지역 피해지원 방안

(“19.6.17일)

I. 지원원칙

-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임.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
- 타 지역사례,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

II. 항목별 지원계획

- ① (상수도·하수도요금) 수질피해발생 이후부터 종료시 까지 전액 면제
- ② (저수조 청소비) 실태조사(6.17(月)~21(金))를 거쳐 실비 지원
- ③ (의료비) 사실관계 확인(예, 의사소견서 등)후 진료비(약제비 포함) 실비 지원
- ④ (필터교체비) 사실관계 확인(예, 영수증 등) 후 실비 지원
- ⑤ (생수구입비) 영수증 등 제출시 실비(시민평균 이용기준) 지원
- ⑥ (수질검사비) 공인인증기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
- ⑦ (소상공인 지원) 피해지역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지원

III. 집행관련

-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나,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체 등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